

일본-인도네시아 EPA 체결

- 일본과 인도네시아 양국 정상은 8월 20일 경제연대협정(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, EPA)에 서명하면서 지난 2년간의 협상을 마무리 지었음¹⁾
 - 양국 모두가 수산 강국이자 수산물 교역 규모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번 EPA 체결은 매우 의미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양국간 수산물 관세 철폐 내용을 살펴보고자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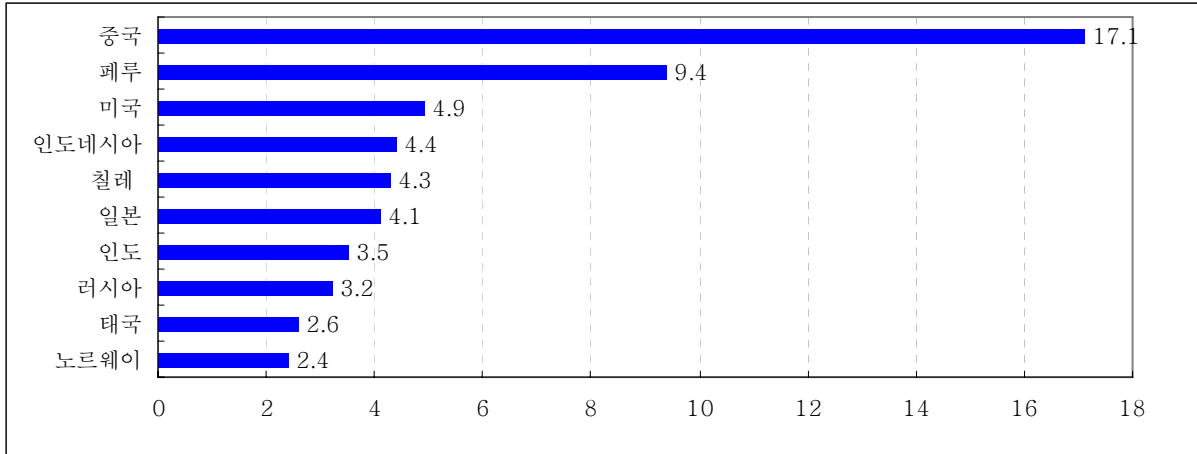
■ 양국 어업 총 생산량 800만 톤 넘어

- 인도네시아와 일본의 어업 생산량(2005년 기준)은 각각 440만 톤과 410만 톤으로 세계 4위와 6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생산량이 많음
 - 양식어업 생산량(2005년 기준)도 인도네시아 120만 톤, 일본 70만 톤을 기록해 양국의 양식 생산량을 합하면 세계 양식 생산량(4,800만 톤)의 3%를 점하고 있음
 - 한편 교역과 관련해 인도네시아의 수산물 수출은 세계 수산물 총 수출의 2%를 점유하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중국, 태국, 베트남 대만에 이어 5번째로 수출이 많은 국가임
-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일본은 어업 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산물을 값싸게 수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
 - 인도네시아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산업 관련 선진 기술 및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자국의 수산업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
 - 아래에서는 일본-인도네시아간 체결한 협정문의 상품 분야를 근거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것임

1) 경제연대협정이란 관세 철폐를 목적으로 한 자유무역협정(FTA)보다 더 포괄적인 협정임. FTA의 내용에다 서비스, 투자, 인적교류 등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일본은 지금까지 싱가포르·멕시코·말레이시아·필리핀·타이·칠레·브루나이·인도네시아와 EPA를 체결했음(8월 23일자 서울신문 인용)

【 세계 10대국의 어업 생산량(2005년 기준) 】

단위: 백만 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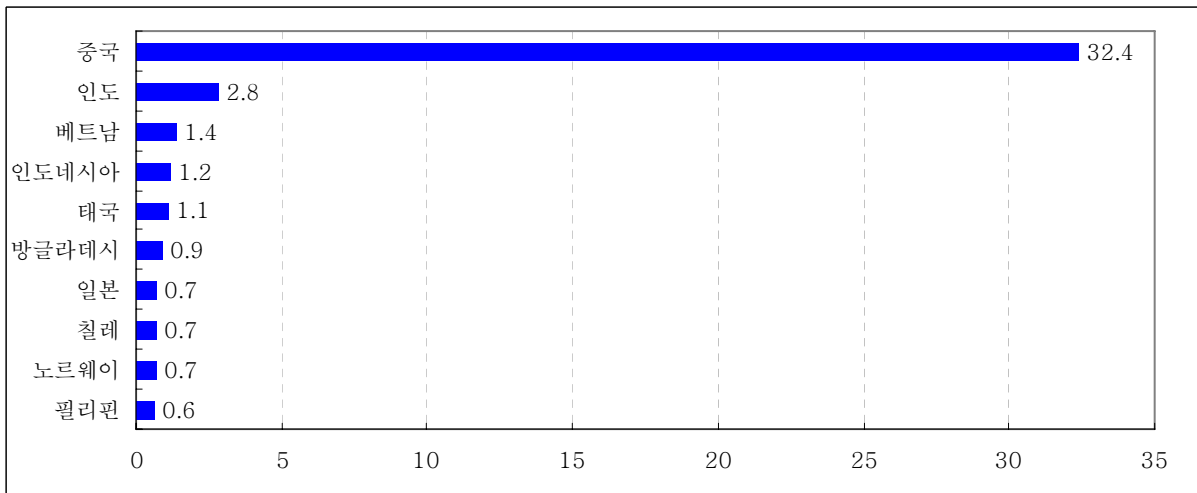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FAO "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, 2006"

주 : 어업생산량은 해면어업과 내수면 어업생산량의 합계임

【 세계 10대국의 양식 어업 생산량(2005년 기준) 】

단위 : 백만 톤



자료 : FAO "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, 2006"

■ 일본, 관세 즉시철폐 수산물 10%, 관세 철폐제외대상은 30%

- 양국 상품의 관세 철폐는 10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는데, 수산물에 대해서는 5개의 카테고리가 적용됨
- 협정 발효 후 일본이 인도네시아산 수산물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은 21개 품목임
 -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이 많은 새우류의 신선냉장 및 냉동 제품, 바닷가재 등과 양식용 치어(송어, 잉어, 기타 어류) 등이 여기에 포함됨

- 특히 새우류의 경우에는 협정 체결 전에도 인도네시아가 일본에 수출하는 수산물의 90%를 차지하였는데 이번 관세 철폐를 통해 인도네시아산 새우의 가격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²⁾
- 한편 일본은 인도네시아와의 경제연대협정 체결을 통해 자국 수산업에 미칠 영향과 민감성을 고려하여 60개의 수산물은 관세 철폐 제외 대상에 포함시켰음
 - 여기에는 뱀장어(활어), 청어, 대구, 정어리의 신선냉장 제품, 연어류(홍연어, 송어, 대서양연어)의 냉동제품 및 건조·염장한 제품 등이 속함

【 수산물 관세 철폐 스케줄 및 주요 품목 】

카테고리	상세 내용	수산물 적용 대상	주요 품목
A	즉시 철폐	21개(10.6%)	양식용 송어 치어(활어), 돛류(신선냉장), 바닷가재(냉동), 새우류(냉동), 새우류(활신선냉장) 등
B3	4년 균등 철폐	-	-
B5	6년 균등 철폐	35개(17.6%)	가자미, 넙치, 서대, 민대구의 신선냉장 및 냉동제품
B7	8년 균등 철폐	27개(13.6%)	청어(건조염장훈제), 굴(활,신선냉장 냉동의 기타제품), 문어(활,신선냉장) 등
B10	11년 균등 철폐	-	-
B15	16년 균등 철폐	-	-
P	양측 양허안에 따라 관세철폐	-	-
Q	일본측 양허안에 따라 관세철폐	-	-
R	TRQ 적용	56 (28.1%)	다랑어류(신선,냉동), 홍합(활,신선냉장), 가리비(냉동), 전복(냉동), 연어(조제가공) 등
X	관세 철폐 제외 대상	60(30.2%)	고등어 신선냉장 및 냉동제품, 홍연어(신선냉장), 송어(신선냉장), 청어(냉동), 대구(냉동), 가리비(활신선냉장), 어분 등
합계		199(100%)	

자료 : 일본-인도네시아 협정문 참고

■ TRQ와 계절 관세로 보호 장치 마련

- 일본은 인도네시아산 수입 상품에 대해 6가지 종류의 관세할당제(Tariff rate quota, TRQ)를 마련하였으며 수산물은 일괄 TRQ 1에 해당함³⁾
 - 즉, TRQ 1이란 협정이 발효하는 첫해부터 시작해 5년 동안 매년 1,000톤을 무관세(쿼터내 물량에 한정)로 수입할 수 있는 품목임⁴⁾

2) 2006년 인도네시아의 대일본 시장 새우 수출은 45,574톤으로 일본의 전체 새우 수입의 19.9%를 차지하였음(자료 : 중국 신화통신 People's Daily Online 인용)

3) 일본은 TRQ 적용 품목을 TRQ1~TRQ6까지 세분화하였으며, 여기에 할당되는 TRQ 물량과 할당 초과 물량에 대한 상이한 관세를 부과하였음

- TRQ 적용 품목은 HS(Harmonized System) 코드 기준으로 총 56개 품목인데 크게 다랑어류와 상어류 등이 있고 그 외 가공식품에 해당하는 16류의 연어, 청어, 고등어, 멸치의 조제 가공제품도 포함되어 있음
- 또한 일본은 할당량 이내로 수입되는 TRQ 품목 외 할당량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계절별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였음
 -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10%의 관세를 부과하고, 10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들어오는 물량에 대해서는 20%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

【 일본의 TRQ 적용 품목 】

TRQ 적용 품목	상세 품목	HS 코드
다랑어류	날개다랑어, 황다랑어, 가다랑어, 눈다랑어, 참다랑어, 남방참다랑어	0302류(신선냉장), 0303류(냉동), 0304류(필릿제품)
고등어	고등어	1604(조제가공제품)
멸치	멸치	"
상어류	상어	0302류(신선냉장), 0303류(냉동), 0304류(필릿제품)
연어류	연어알, 연어	0305류, 1604류(조제가공제품)
게류	게, 바닷가재	0306류, 1605류
굴	굴	0307류의 활신선냉장
홍합	홍합	0307류의 활신선냉장 및 냉동제품
전복	전복	0307류의 활신선냉장 및 냉동제품,
기타수생 동물	갑오징어, 오징어, 가리비 해삼	1605류의 훈제제품 1605류의 기타가공제품

■ 일본-인도네시아 EPA, 일본수산업의 민감성 반영

- 이상 양국 EPA 협정문의 수산물 관세 분야를 살펴본 결과, 일본은 자국 수산업이 받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 점진적 개방을 추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
 - 특히 협정 시행과 동시에 관세가 즉각 철폐되는 품목이 21개 품목이나 향후 8년 내에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의 40%는 관세가 철폐될 것으로 전망됨
- 또한 일본은 이번 협정을 통해 자국 주요 어업 및 양식 산업을 보호·발전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실익은 챙긴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
 - 일례로 일본에서 생산이 많이 이뤄지는 다랑어의 경우에는 TRQ를 통해 일정부 분 수입을 제한하였음
 - 연어의 경우 치어 수입은 즉시 관세 철폐를 하는 한편 연어류의 신선냉장제품에

4) 5년 후 TRQ 물량에 대해 양국은 재논의하게 됨

대해서는 관세철폐 제외대상으로 분류함으로써 연어 양식에 필요한 치어는 저렴하게 수입하고, 부가가치가 높은 연어류의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완전 차단한 것이 대표적임

■ 일본의 전방위 FTA 추진 대비해야

- 일본은 이번 인도네시아와의 경제연대협정 체결 외 다양한 FTA를 체결하고 있어 향후 한국의 대일본 시장 수산물 수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
 - 일본은 인도네시아와 외에도 수산물 강국인 태국, 필리핀과도 FTA를 이미 체결해 수산물 수입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
 - 일본의 수산물 교역 상대국으로써 한국의 입지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임